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12호 2021. 7. 14(수)

거창 愛 휴 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109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공 고

제2021-1006호 21년도 산림소득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 신청 공고 ······ 4
제2021-1007호 공인 폐기 공고 ······ 20
제2021-1012호「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제2021-103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57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 - 10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4.

거 창 군 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260 등 4건**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102-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43-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260	20210714	20090702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842-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45-2	20210714	20091228	가북면 용암리를 지나 해인사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86-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33-14	20210714	20091228	고학의 새로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286-2, 287-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봉계길 131	20210714	20090401	한말 이곳에 살면서 동학혁명 때 치안유지에 공이 있었다는 하종호의 호 봉서의 새봉자를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102-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102-6	20210714	20090401	대현리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변경	

거창군 공고 제2021 - 1006호

‘21년도 산림소득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 신청 공고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7. 8.

거 창 군 수

Ⅰ 사업개요

❑ 예산규모 및 지원조건

○ 사 업 명 :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 예산규모 :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 지원조건 : 보조50%, 자부담 50%

❑ 신청기간 : 2021. 7. 8. ~ 7. 23.(16일간)

❑ 신청자격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요건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Ⅱ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신청서류 및 방법

○ 산림소득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증빙서류

- 임업인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생산자단체 현황·운영실적 등 :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 내역, 사업대상 토지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등
- 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신청자는 거창군 산림과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 추진절차

사업신청 (신청자→군.읍면)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거창군) ⇨ **보조금 심의회 개최 및 보조금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신청자→거창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거창군→신청자) ⇨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신청자→거창군) ⇨ **보조사업 실행 현장 확인** (거창군)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거창군)

❑ 참고사항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추진

*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내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사업연도 교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시 보조사업이 취소 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정산 등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해야 함

○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법령을 따름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Ⅲ 세부사업내용

<table>
<tr><td>구분</td><td>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td></tr>
<tr><td>사업대상자</td><td>임업인 등, 생산자단체</td></tr>
<tr><td>대상자 선정</td><td>지방자치단체</td></tr>
<tr><td>보조비율</td><td>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td></tr>
<tr><td>신청기간</td><td>2021. 7. 8. ~ 7. 23.</td></tr>
<tr><td>사업 목적</td><td>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td></tr>
<tr><td>지원 내용</td><td>(약용·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정·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td></tr>
<tr><td>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td><td>1억원 미만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td></tr>
<tr><td>기타</td><td>-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지원 제한
- 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table>
<tr><th>품목의 종류</th><th>세 부 내 용</th></tr>
<tr><td>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td><td>25,000㎡/개소 이상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td></tr>
<tr><td>산림버섯류</td><td>(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td></tr>
<tr><td>관상산림식물류</td><td>(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td></tr>
</table>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td></tr>
</table>

○ 산림작물생산단지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지원한도는 조정불가)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21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토양개량제	조달가격 적용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21년에 사업 신청)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3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84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 ('21년에 사업 신청)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1,000원(W 30cm × L 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577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3년 1회 지원가능('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지원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위한시설	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3HP 이상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비가림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지원 가능
모노레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1,500천원/0.5ha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지원 요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내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관리사	(지원 요건)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냉·난방시설 지원 대상 아님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 참조 * 소모성 자재(상토)는 지원대상 아님
작업로 시설 (신규)	(지원 요건) 노폭 2m 내외의 작업하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콘크리트 포장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참조

농림축산식품 사업(산림소득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
청
자</td><td>생산자단체
등의 명칭</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 colspan="2">전화번호</td><td></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3"></td><td colspan="2">참여농가수</td><td>호</td></tr>
<tr><td rowspan="6">신
청
내
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6">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td></tr>
<tr><td>대상품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2">농작물재해보험가입</td><td>여, 부</td></tr>
<tr><td colspan="2">산촌거점권역</td><td>여, 부</td></tr>
<tr><td colspan="2">특별관리임산물
채종단지 지정</td><td>여, 부</td></tr>
<tr><td rowspan="2">예산규모</td><td colspan="6">총사업비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td></tr>
<tr><td colspan="6">*보조율 : 국고20%, 지방비30%, 50%</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6">대상지면적 ㎡, 시설(예정)면적 m</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은 뒷면 참조)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은 뒷면 참조)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3. 가족관계등록부,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및 관련서류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임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table>
<tr><td rowspan="4">영 농
규 모
(ha)</td><td>지번</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계</td></tr>
<tr><td>소유</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임차</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계</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재 배
현 황
(ha)</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시 설
현 황</td><td rowspan="4">개별
시설</td><td colspan="2">관수시설</td><td>저온저장고</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관 정 : ha</td><td>㎡</td><td>㎡</td><td>대</td><td></td></tr>
<tr><td colspan="2">점적관수 :</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스프링쿨러 :</td><td></td><td></td><td>(톤)</td><td></td></tr>
<tr><td rowspan="2">공동
시설</td><td colspan="2">저온저장고</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개소
(톤)</td><td>식</td><td>대
(톤)</td><td>㎡</td></tr>
<tr><td colspan="7"></td></tr>
<tr><td>기 타
사 항</td><td colspan="7"></td></tr>
</table>

2. 사업계획

○ 사업명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세부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규격	단가(천원)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국비)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거창군 공고 제2021-1007호

공인 폐기 공 고

「거창군 공인조례」제11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8.

거 창 군 수

1. 폐기사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폐지

2.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1. 7. 8.

3.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	3.6cm×3.6cm	

거창군 공고 제2021 - 1012호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표준수수료)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대 요청에 따라 감면대상자에 국가 보훈보상 대상자를 추가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징수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확대함. (안 제5조)

나.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확대함. (안 제7조)

다.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함.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라. 전화)055-940-3253, 팩스)055-940-3219, 이메일)cyj00@korea.kr

붙 임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장한다.

거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 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등은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증명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 신상에 관한 사항			
가. 이장재직사실확인	1통	~~800~~ 500	변경
나. 재직(퇴직,경력)증명	1통	1,000	
다.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1,000	
라.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사실확인	1통	1,000	
2.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가. 표준주택 설계도면	1호	1,500	
나.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1건	1,000	
다.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800	
라.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1,000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사. 체비지 분할 신청	1건	1,000	
아.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000	
자.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건	1,000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1,000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락	1건	1,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3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800	
나.「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4.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가. 급수공사 설계 1) 급수관구경 40㎜ 미만 2) 급수관구경 40㎜ 이상 3)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2,000 4,000 설계금액의 100분의1	
나. 시공자재 검사 1) 급수관구경 40㎜ 미만 2) 급수관구경 40㎜ 이상		 2,000 4,000	
다. 준공검사 1) 급수관구경 40㎜ 미만 2) 급수관구경 40㎜ 이상		 2,000 4,000	
라. 정수처분 해제 1) 급수관구경 40㎜ 미만 2) 급수관구경 40㎜ 이상		 2,000 4,000	
5.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건	500	

〔별표 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500	
3) 제적등본	1통	500	
4) 제적초본	1통	3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500	
	연도 추가	100	
6) 토지(임야)대장	1통	300	
	추가 1장당	100	
7) 건축물대장	1통	300	
8) 자동차등록원부	1통	2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300	
10) 농지원부(관내)	1통	500	
1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500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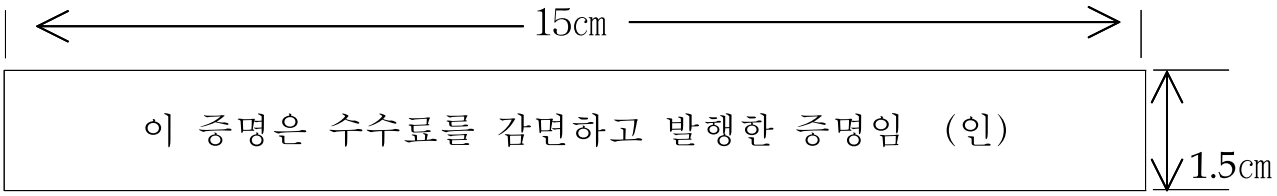

관련법령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8호, 2021.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삭제 <2021. 4. 6.>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삭제 <2021. 4. 6.>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 · 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삭제 <2021. 4. 6.>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삭제 <2021. 4. 6.>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삭제 <2021. 4. 6.>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 수료	1건당 2,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	1건당 10,000원

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5,000원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	1건당 30,000원

신청 수수료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6. (생략)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2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항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 등(제11조제2항 관련)

번호	민 원 사 항	수수료 감면비율 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	100분의 100
2	「농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의 발급	100분의 100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그 등본·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 및 그 등본·초본의 발급	100분의 100
5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100원
6	「종자산업법」 제133조에 따른 보증종자 보증서의 발급	100분의 100(국문)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허가증의 재발급	3,300원
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 신고증의 재발급	3,300원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	3,300원

	른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문증명의 발급	200원
11	「소방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구조·구급증명서의 발급	100분의 100
12	「기상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발급	100분의 20
13	삭제 <2021. 6. 8.>	
1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의 증명	100분의 100
15	「선원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증 발급	100분의 10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 표] <개정 2017. 12. 21.>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

	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상어양식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양식 생물	[ ] 어류 [ ] 식물 [ ] 기타( )	
시설	시설면적	
	수조의 수면적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중점 확인사항> 1. 시설 임차 잔여 기간(해당자에 한함) 2. 수조의 수면적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

[경상남도 법무담당관-8221호(2020.8.28.)]

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5359호(2020, 8. 28.)와 관련됩니다.
2.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 · 공무원 및 그 유족 등)**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 공무원 및 그 유족 등)**가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되어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드리오니, **관련 조례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 관련 설명자료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또는 질병)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1급~7급)로, 생활편의를 위한 기본복지 혜택에서 장애인 수준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급증

○ **(필요성)** 병역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영역 강화**는 **당연한 책무**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수준 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할 **필요**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정의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12.7.1.)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조항 폐지***

* 예우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폐지, 부칙(제19조)에 경과조치 명시

-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순직(전몰)군경, 전상(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개편 법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이 지원대상으로서 기득권 보호

* 대상유형 :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현황 ('20.7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순직 군경	지원 공상 군경	지원 순직 공무원	지원 공상 공무원	재해 사망 군경	재해 부상 군경	재해 사망 공무원	재해 부상 공무원
본인	6,610	0	1,774	0	524	0	4,175	0	137
유족	1,909	185	81	219	60	884	294	181	5
합계	**8,519**	**185**	**1,855**	**219**	**584**	**884**	**4,469**	**181**	**142**

□ 협조 요청 사항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시,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추가**

-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에 전달 및 적극 반영 협조

< 개정안 예시 1 - ○○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 00. (생 략)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례명	규정내용(문제점)	**정비방향**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다양한 납부방법을 규정해야 함**

□ 법제처 의견제시 13-0300

질의제목 :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상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관련)

관련문서 : 북구 기획실 - 13874(2013. 10. 2.)13-0300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제증명수수료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필요 이상의 증명 등을 신청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계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필요 이상 많은 수량의 증명 등을 신청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①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이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아닐 경우, 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이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도 아니고 해당 상위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도 않은 경우에는 조례로 수수료 면제 요건이나 수

수료 면제의 제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② 그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서 상위법령에 그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조례를 규정하여야 하고, 조례로서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수수료의 면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수수료 면제의 제한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계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필요 이상 많은 수량의 증명 등을 신청한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규정할 경우 수수료 면제 제한의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이 자의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요건으로 수수료 면제의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도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수수료규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그 금액 및 그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를 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건 위임받은 사무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의 면제나 면제의 제한에 관하여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을 뿐 수수료를 면제할 수는 없고,***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수수료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수수료의 면제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에 모든 수수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나 수수료 면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수수료 조례」(이하 “부산시북구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 이 사안은 부산시북구조례를 개정하여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의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계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필요 이상 많은 수량의 증명 등을 신청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의 면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수수료의 면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어렵고, 해당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수수료인지, 해당 수수료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징수되어야 할 수수료인지, 수수료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지 등 수수료의 구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안 질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성질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서 해당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가 아닌 경우 및 수수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이면서 수수료에 관해서 상위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도 아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이나 수수료 면제를 제한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수수료 면제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의 요건이나 수수료 면제의 제한 요건은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자를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데, 부산시북구조례 개정안 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계속적이거나 고

1) 비록 부산시북구조례 제8조제1항에서 일률적인 면제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특정인을 위한 해당 사무가 부산광역시 북구의 사무인 경우 또는 해당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이더라도 상위법령에 수수료의 상·하한이나 수수료 면제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어서 조례로 해당 기관위임사무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적으로 필요 이상 많은 수량의 증명 등을 신청한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규정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 여부가 좌우될 소지가 많으므로 적절한 규정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정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에 따라 정해진 표준수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거나 수수료의 면제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이면서 사무의 위임을 정한 해당 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고, 상위법령에 정한 바와 달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수수료의 면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조례에 일률적으로 수수료의 면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이상을 정리해보면, 수수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이고 그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도 아니며 상위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하여 정한 바도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수수료의 면제나 수수료 면제의 제한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서 상위법령에 그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사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해당 수수료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례를 규정하여야 하고, 조례로서 수수료의 성질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수수료의 면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수수료 면제의 제한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계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필요 이상 많은 수량의 증명 등을 신청한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규정하게 되면 법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게 되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에 수수료의 면제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수수료 면제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드물게는 자치사무인 경우에도 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면제할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 면제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해당 수수료의 면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둘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103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4.

거 창 군 수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공고기간 : 2021.7.14.~ 2021.7.29.(15일간)

3.대상차량 : 256가9757

순번	차량번호	차명	모델연도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일자
1	256가9757	CHEVROLET EQUINOX FWD	2019	기타	2021. 7. 14.

4.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